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태료 수준 상향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55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과태료 수준 상향(안 제26조제1항·제2항)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1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각종 사업주 의무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유형에 따라 각각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의실의 경우 50% 미만으로 보유 또는 설치되어 있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서 건설근로자 복지제공 등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제2항).

Ⅲ. 검토의견

1. 과태료 수준 상향(안 제26조제1항·제2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300만원
은 500만원으로, 500만원은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건설근로자 복지제
공 등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제고하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제26조(과태료) ① ----- ----- <u>1천만원</u>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u>300만원</u>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② ----- ----- <u>500만원</u> ----- -----.
③·④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건설공사 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
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

치해야 할 의무,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를 할 의무,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할 의무,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법 제26조에서 건설사업주의 의무 위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00만원·300만원·100만원의 3단계 과태료 부과 체계를 두고 있음. 주로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환경 및 퇴직공제 제도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무 위반은 500만원 또는 300만원, 행정적 신고·보고 의무 위반은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조항)	위반 의무
500만원 이하 (제26조제1항)	• 건설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제7조의2 위반) •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10조의4제1항 위반)
300만원 이하 (제26조제2항)	•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7조의3제1항 위반) •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제7조의3제2항 위반) • 임금 미지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제7조의3제3항 위반) • 공사원가 계산서 등에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제10조의3제1항 위반) • 하도급 공사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제10조의3제2항 위반) • 피공제자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않은 경우(제13조제1항 위반) •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제13조제1항 위반)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제13조제4항 위반) • 공제부금 납부 의무 통보 후에도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제13조의2 위반)

과태료 금액 (조항)	위반 의무
100만원 이하 (제26조제3항)	•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5조제1항 위반) •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제15조제2항 위반) •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시정 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제23조 위반)

그러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¹⁾ 건설현장의 위생·편의시설 보유 수준 및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탈의실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근로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또한, 동 조사에서는 임금 지급, 근로계약 체결, 사회보험 가입, 안전·보건 관리 등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설치뿐 아니라 임금 지급 관리, 퇴직공제 가입, 근로일수 신고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건설근로자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8.

특히 건설현장은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고 현장의 이동성이 높은 특성이 있어 사업주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근로환경 관련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²⁾ 과태료 수준 상향을 통한 법 준수 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사업장의 규모 및 부담능력, 다른 유사 법률과의 제재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규모 및 사업주의 경영상 여건이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 상향이 영세 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업주의 법정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원방안 마련 등을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 기준 상향

2) 중앙일보, “건설현장 100곳 중 3곳, 화장실도 없다…샤워실 없는 곳도 34%”, 2020.11.19.

여부 및 상향 수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노동계, 건설업계 등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참고

건설현장 편의시설 관련 현황

(단위 : %, 점)

	설치 현황 및 상태 ¹⁾				만족도 ²⁾					
	유/무	수량	청결	접근성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평균 [5점]
2022년										
화장실	90.9	60.7	65.3	61.4	9.6	17.9	33.7	34.1	4.6	3.06
샤워실	34.7	67.8	85.4	73.9	2.6	9.6	42.2	40.4	5.2	3.36
탈의실	41.0	73.0	84.0	78.5	2.8	9.6	41.5	40.1	6.1	3.37
휴게실	60.2	56.4	78.6	62.6	5.5	16.0	43.9	28.2	5.4	3.13
식당	62.2	76.3	85.5	69.5	6.5	12.0	37.7	39.1	4.7	3.23
2024년										
화장실	91.9	45.0	54.9	44.6	12.5	23.4	38.4	19.6	6.0	2.83
샤워실	27.2	51.3	72.4	56.8	7.2	17.0	48.2	20.6	7.0	3.03
탈의실	35.2	60.3	74.1	66.8	5.0	14.0	47.2	25.6	8.2	3.18
휴게실	73.5	41.9	67.9	54.2	7.1	21.5	45.8	19.6	6.0	2.96
식당	61.6	65.1	48.0	60.4	7.0	19.8	45.0	21.9	6.3	3.01

주 : 1)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있다), 수량 또는 크기가 충분한가(충분), 깨끗한가(깨끗), 접근이 편리한가(편리)에 대한 응답 비율임

2) 만족도에 대한 5점척도 답변 결과임

3) 당해연도 퇴직공제에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2022, 2024 건설근로자공제회)